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42호 2020. 9. 2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2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64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62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9.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도로) 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3-9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218	원창동 345-3	원창동 356-12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168호 (2017.12.18.)	
변경	소로	3	1	4	국지도로	218	원창동 345-3	원창동 356-12	일반 도로		서고 제2017-168호 (2017.12.18.)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22	소 3-1	원창동 354-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168호 (2017.12.18.)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8	소 3-1	원창동 343-2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168호 (2017.12.18.)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선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선형 일부변경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곶로 500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9.2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9-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김림동 229-11, 229-2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00 (김림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1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68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9-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718번길 34-1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2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2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2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4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1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2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3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2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5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2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7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2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70-9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4-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18-1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3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9-2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85 (가좌동, 로얄타운)	건물말소	20090922	여우가 자주 다니는 고개라는 뜻의 옛 지명을 반영	로얄타운
2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79 (가좌동, 로얄타운)	건물말소	20090922	여우가 자주 다니는 고개라는 뜻의 옛 지명을 반영	로얄타운
3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75번길 18 (가좌동, 한신빌라)	건물말소	20090922	여우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한신타운하우스
4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75번길 23 (가좌동, 한신빌라)	건물말소	20090922	여우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한신빌라
5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75번길 15 (가좌동, 한신빌라)	건물말소	20090922	여우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한신빌라
6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75번길 16 (가좌동, 한신빌라)	건물말소	20090922	여우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한신상가
7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81번길 17 (가좌동, 한신노인정)	건물말소	20090922	여우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한신노인정
8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20 (가좌동, 라이프빌라)	건물말소	20090706	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18 (가좌동, 라이프빌라)	건물말소	20090706	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라이프빌라
10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26 (가좌동, 라이프빌라)	건물말소	20090706	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라이프빌라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21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건물말소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4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 9.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서구 지역화폐를 통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배달서구, 남남서구몰, 온리서구몰, 서로도움, 서구소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역화폐 사업의 명확화 하고자 함
-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달서구, 남남서구몰, 온리서구몰, 서로도움, 서구소식 정의 조문 신설
- 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조문 신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공개 조문 수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4조(지역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유효기간 조문 수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른 제한업종 조문 수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절차 조문 수정 및 삭제
-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조문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장)에게 2020.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628, FAX 032-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서구 지역화폐를 통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배달서구, 남남서구몰, 온리서구몰, 서로도움, 서구소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역화폐 사업의 명확화 하고자 함
- 나.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다.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배달서구, 남남서구몰, 온리서구몰, 서로도움, 서구소식 정의 조문 신설 [조례안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조문 신설 [조례안 제10조의 2]
- 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공개 조문 수정 [조례안 제17조]
- 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4조(지역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유효기간 조문 수정 [조례안 제18조]
- 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른 제한업종 조문 수정 [조례안 제19조]
- 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절차 조문 수정 및 삭제 [조례안 제20조]

사.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조문 신설 [조례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배달서구”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즉석조리음식등의 주문·결제 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10. “남남서구몰”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구의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식품등을 주문·결제 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11. “온리서구몰”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구의 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등을 주문·결제 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12. “서로도움”이란 지역화폐 플랫폼의 충전액 또는 지급받은 캐시를 이용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3. “서구소식”이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구 지역 내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로, “활성화기금”을 “활성화기금”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는 제30조”를 “위원회의 기능은 제36조”로, “검직한다”를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개의하며”를 “회의를 시작하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에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있다”를 “있고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지원위탁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행 및 운영,”을 “발행, 운영 및”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발행일로부터 3년”을 “발행일부터 3년으로 하고 전자식의 경우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간 또는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흥업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유흥업소”로 한다.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취소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배달서구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제공되는 가맹점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변조”를 “위조·변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발생일로”를 “발생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계약서 및 협약서,”를 “계약서, 협약서 및”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7조 중 “있을시”를 “있을 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무에 대하여”를 “사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를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매해”를 “매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3영업일이내”를 “3영업일 이내”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달리”를 “다르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적립일로”를 “적립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환으”를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나목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배달서구, 남남서구물, 온리서구물(이하 “배달서구등”이라 한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지역화폐를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용자 중 배달서구등을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사용자

다. 쿠폰제공주기: 월 2회 이하

라. 쿠폰의 제공범위: 각 서비스별 1인 1회 5,000원 범위 내

8. 배달서구등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추천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추천한 사용자에게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용자중 배달서구등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추천인코드로 입력된 추천자

다. 쿠폰제공주기: 추천인코드로 입력 후 1일 이내

라. 쿠폰제공범위: 월 2회 3,000원 범위 내 쿠폰지급

9. 배달서구에서 월 3회 또는 5회 이상 결제한 사용자에게 배달서구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회 또는 5회 이상 결제한 사용자

다. 쿠폰제공주기: 월 1회

라. 쿠폰제공범위: 월 1회 5,000원 범위 내 쿠폰제공

10. 배달서구 첫 결제 시 할인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배달서구 첫 결제 시

다. 쿠폰제공주기: 첫 결제 후 1회

라. 쿠폰제공범위: 첫 결제 후 5,000원 범위 내 쿠폰제공

11. 배달서구에서 첫 결제 후 일정기간 이내(1~2주) 재결제를 한 사용자에게 배달서구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첫 결제 후 일정기간 이내(1~2주) 재결제를 한 사용자 (매월 기간 변경가능)

다. 쿠폰제공주기: 재결제 후 1회

라. 쿠폰제공범위: 재결제 후 5,000원 범위 내 쿠폰제공

12. 주문취소율(자동취소 + 가맹점 취소)이 낮은 가맹점에 대하여 매월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가맹점을 선정하여 캐시 또는 배달용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급방법: 서로e음 캐시 또는 배달용 물품 지급

나. 지급기준: 매월 20건 이상 주문이 이루어지는 가맹점 중 자동취소와 가맹점 취소비율이 낮은 가맹점을 선정하되 취소율이 같은 경우 결제건수가 작은 가맹점에 지원하며 결제율이 같은 점포수가 배달서구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모두 지급

다. 제공주기: 월 1회

라. 제공범위: 월 10만원 범위 내 캐시 또는 배달용 물품 지급

13. 혜택플러스 가맹점 이용 시 스탬프 획득에 따른 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가맹점에서 결제 시 지정된 결제금액 또는 결제횟수에 따라 쿠폰 제공

나. 쿠폰제공기준: 가맹점에서 스탬프 제도 운영 시 설정한 스탬프 제공 기준을 따르거나 결제횟수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 구에서 설정한 기준

다. 쿠폰제공주기: 일정 횟수(5회~10회)의 스탬프를 획득

라. 쿠폰제공범위: 3,000원 범위 내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

제3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배달서구”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즉석조리음식등의 주문·결제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u></p> <p>10. <u>“남남서구몰”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구의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식품등을 주문·결제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u></p> <p>11. <u>“온리서구몰”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구의 사업자가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등을 주문·결제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u></p> <p>12. <u>“서로도움”이란 지역화폐 플랫폼의 충전액 또는 지급받은 캐시를 이용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u></p> <p>13. <u>“서구소식”이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구 지역 내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u></p>

9.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화폐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30조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가 겸직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신설>

14. (현행 제9호와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 인천광역시 -----
----- 활성화기금-----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르
며-----
-----.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36조 -----
-----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를 시작하며-----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①

지역화폐는 구청장이 발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에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7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①

----- 있고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 운영대행사, 지원위탁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발행, 운영 및 -----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된 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 ① (생략)
- ② 지류형의 경우, 지역화폐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9조(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

한) ① 판매된 지역화폐는 구에 소
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
다.

- 1. 2. (생략)
-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구
청(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서구
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4. (생략)
- ②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
포 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보호정책상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
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전
자식의 경우 「인천사랑상품권 발
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간
또는 발행일로부터 5년-----.

제19조(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

한)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

----- 그 밖의 -----

- 4. (현행과 같음)
- ②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와 유흥업소 -----
-----.

제20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 ③ (생략)

<신설>

④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중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혜택플러스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역화폐 혜택플러스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⑦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0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배달서구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⑦ -----

----- 있고 취소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제공되는 가맹점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삭제>

경우에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혜택플러스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3.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생략)
-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⑤ (생략)
-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② (생략)

제2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 위조·변조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 -----
-----.

- ④·⑤ (현행과 같음)
- ⑥ -----

----- 발생일 -----
-----.

제23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24조(운영대행사 선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거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생략)

제26조(개인정보 보호) ① (생략)

②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본조 신설 2019.7.11.]

제27조(자료 제출) 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발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구청장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7.11.]

제29조(운영대행사 해지 등) ① 구청

③ ----- 계약서, 협약서 및 -----.

제24조(운영대행사 선정) ① -----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개인정보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는 -----
-----.

1. 2. (현행과 같음)

3. ----- 관계 법령 -----

제27조(자료 제출) -----

----- 있을 시 -----

제29조(운영대행사 해지 등) ① -----

장은 제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기타 운영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7.11.]

제30조(지원위탁단체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매해 지원위탁단체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위탁단체를 재위촉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중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7.11.]

제32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생략)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사무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구청장
이 -----

-----.

④ 그 밖의 -----

제30조(지원위탁단체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매년 -----

제32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3영
업일 이내-----.

③ (현행과 같음)

탁단체를 선발하여 기금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2. 3. (생략)

③·④ (생략)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혜택플러스 가맹점 초성게임에 따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경품권제공기준: 초성게임 참여자 중 정답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

다. 라. (생략)

5. 6. (생략)

<신설>

범위-----
-----.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하나-----
-----.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한정하여 -----

다. 라. (현행과 같음)

5. 6. (현행과 같음)

7. 배달서구, 남남서구몰, 온리서구몰(이하 “배달서구등”이라 한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 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지역화폐를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용자 중 배달서구등을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사용자

다. 쿠폰제공주기: 월 2회 이하

라. 쿠폰의 제공범위: 각 서비스 별 1인 1회 5,000원 범위 내

8. 배달서구등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추천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추천한 사용자에게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 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용자 중 배달서구등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추천인코드로 입력된 추천자

다. 쿠폰제공주기: 추천인코드로 입력 후 1일 이내

라. 쿠폰제공범위: 월 2회 3,000원

<신 설>

<신 설>

<신 설>

범위 내 쿠폰지급

9. 배달서구에서 월 3회 또는 5회 이상 결제한 사용자에게 배달서구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 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회 또는 5회 이상 결제한 사용자

다. 쿠폰제공주기: 월 1회

라. 쿠폰제공범위: 월 1회 5,000원 범위 내 쿠폰제공

10. 배달서구에서 첫 결제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 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배달서구에서 첫 결제 시

다. 쿠폰제공주기: 첫 결제 후 1회

라. 쿠폰제공범위: 첫 결제 후 5,000원 범위 내 쿠폰제공

11. 배달서구에서 첫 결제 후 일정 기간 이내(1~2주) 재결제를 한

<신 설>

사용자에게 배달서구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앱 내 쿠폰으로 제공하여 1개월 이내 사용 기한을 지정하여 미사용 시 쿠폰 소멸

나. 쿠폰제공기준: 첫 결제 후 일정기간 이내(1~2주) 재결제를 한 사용자(매월 기간 변경가능)

다. 쿠폰제공주기: 재결제 후 1회

라. 쿠폰제공범위: 재결제 후 5,000원 범위 내 쿠폰제공

12. 주문취소율(자동취소 + 가맹점 취소)이 낮은 가맹점에 대하여 매월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가맹점을 선정하여 캐시 또는 배달용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급방법: 서로e음 캐시 또는 배달용 물품 지급

나. 지급기준: 매월 20건 이상 주문이 이루어지는 가맹점 중 자동취소와 가맹점 취소비율이 낮은 가맹점을 선정하되 취소율이 같은 경우 결제건수가 작은 가맹점에 지원하며 결제율이 같은 점포수가 배달서구 전체 가맹점의 100분의 1을 초과

<신 설>

7. (생 략)

제36조(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2. (생 략)

할 경우 모두 지급

다. 제공주기: 월 1회

라. 제공범위: 월 10만원 범위 내

캐시 또는 배달용 물품 지급

13. 혜택플러스 가맹점 이용 시스템프 획득에 따른 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쿠폰제공방법: 가맹점에서 결제 시 지정된 결제금액 또는 결제횟수에 따라 쿠폰 제공

나. 쿠폰제공기준: 가맹점에서 시스템프 제도 운영 시 설정한 시스템프 제공 기준을 따르거나 결제횟수 또는 결제금액에 따라 구에서 설정한 기준

다. 쿠폰제공주기: 일정 횟수(5회 ~10회)의 스탬프를 획득

라. 쿠폰제공범위: 3,000원 범위 내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

14.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6조(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

-----.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7.11.]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생략)
-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 3. ~ 8. (생략)
- ④ (생략)

제3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3. 그 밖에 -----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 2. 구의회-----

- 3. ~ 8.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를 시작-----
-----.

③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발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9.21.~'20.10.12.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9.21.~'20.10.12.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 운영관련 용어 변경으로 청소년시설의 내실화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며,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변경(육성, 지도 ⇒성장지원, 지원)
-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시설 기능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시설 명칭 변경 추진 근거 마련(수련관, 문화의집 ⇒ 센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560-5892,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 명칭변경 추진 및 용어변경으로 친숙
하 청소년 시설 이미지 제고 및 통일성 있는 청소년 시설 운영, 주체성 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가.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며,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
는 용어로 변경
- 수련이라는 표현 삭제 또는 변경(수련활동, 심신수련 등 ⇒ 활동, 심신지원 등)
 -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성장 지원
 - 지도 ⇒ 지원
- 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시설 기능을 반영한, 통일성 있
는 청소년 시설 명칭 변경 추진 근거 마련(수련관, 문화의집 ⇒ 센터)
(안 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련활동”을 “활동”으로, “육성지원”을 “성장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련시설”이란”을 ““청소년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으로, “수련활동”을 “활동”으로, “갓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를 “갓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신수련”을 “심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련활동”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련시설의 사용 등)”을 “(시설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시설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0조의2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u>수련활동</u>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u>청소년수련시설</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u>청소년수련시설</u>(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u>육성</u>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u>수련시설</u>”이란 청소년을 주 이 	<p><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활동</u> ----- <u>성장지원</u>----- - <u>청소년시설</u>----- ----- -----.</p> <p>제2조(명칭 및 위치) ----- <u>청소년시설</u>----- ----- -----.</p> <p>제3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성장지원</u>----- ----- -----. 3. “<u>청소년시설</u>” (이하 “시설”이라

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4. (생략)

제4조(업무) 수련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수련시설의 사용 등) ① 수련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수련시설 사용에 지

한다)이란 -----

 ----- 활동 -----
 -----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시설 -----
 ----- 한다 -----
 -----.

1. ----- 성장지원 -----

2. ----- 심신지원 -----
3. ----- 활동 -----

4. ----- 지원 -----
5. ----- 시설 -----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시설 -----

 -----.

1. (현행과 같음)
2. -----

 ----- 시설 -----

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
간대에 한한다.

3. (생략)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련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수련시설 사용허가) ① 수련시
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
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교육수강료
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의2(강사)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
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
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3. (현행과 같음)

② -----
----- 시설 -----

-----.

1. 2. (현행과 같음)

3. ----- 시설 -----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

-----.

② 시설 -----
-----.

제8조(사용료 등) ① -----
----- 시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강사) ① ----- 시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 ② (생략)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제10조의2(셔틀버스 운행) -----
시설 -----

-----.

제11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
- 시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시설-----

-----.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시설-----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
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제18조(보험가입 의무) ① 구청장 또
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
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
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가입 의무) ① -----

----- 시설 -----

【별지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해당
연희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가좌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번길 12(가좌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해당
검단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88번길 3(마전동)	

※ 청소년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2】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센터에 한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2,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장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공연장은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2시간 이상은 다음 회 사용료의 10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50%를,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30%를 추가 징수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센터에 한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아	노	1회 공연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무대시설	공	바 툰	1회 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젝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 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를 가산하여 시간당 사용료를 산출함 ※ 봄·가을철(3월~5월, 9월~10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다음해 2월말) ○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냉방(6월~8월) 및 난방(11월~2월말) 해당기간에는 냉·난방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 준비 및 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부속설비(무대시설,대·소도구 등 시설 내 물품 일체)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3. 수영장 사용료(서구 청소년센터에 한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4,000	38,000	1일 1회만 출입하는 기준금액임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3,000	28,000	
1일 이용	개 인	5,000	3,000	2,000	
	단 체	4,000	2,500	1,500	

【 비 고 】

1. 단체란 **동일소속**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어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5,000원,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4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9.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 운영관련 용어 변경으로 청소년시설의 내실화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며,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변경(육성, 지도 ⇒성장지원, 지원)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560-5892,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 용어변경으로 친숙한 시설 이미지 제고 및 주체성 있는 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가.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며,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변경
- 수련이라는 표현 삭제(수련시설 ⇒ 시설)
 -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성장 지원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반환받고자 ⇒ 돌려받고자 , 납입 ⇒ 납부,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개정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를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련시설의 적정”을 “시설의 적절”로 한다.

제4조 중 “반환받고자”를 “돌려받고자”로 한다.

제5조 중 “납입”을 “납부”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내·외부”를 “내부와 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를 “(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지계산서”를 “수입·지출 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 성장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련시설”을 각각 “시설”로, 같은 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신청·취하 등) ①「<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련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u>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사용신청·취하 등) ①「<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u>」----- <u>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시설의 적절</u>-----</p>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6조(셔틀버스 운행)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 4. ~ 8. (생략)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
----- 돌려받고자 -----

-----.

제5조(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 -----

----- 납부 -----
-----.

제6조(셔틀버스 운행) -----

-----.

- 1. 2. (현행과 같음)
- 3. --- 내부와 외부 ----
-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 -
----- 시설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수입·지출 계산서 -----

5. (생략)

6. 최근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7.·8. (생략)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말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 청소년 성장지원 -----

7.·8.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 -----
----- 시설 -----

-----.

② ----- 시설 -----

다음 해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전 화	
내 용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신청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뒷면)

이 용 자 준 수 사 항

1.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시설 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취하원				
발급번호 : 제 호				
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용	사용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구분	[일반]	[감면]	
	취하시설명			
	취하신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취하사유			
	납부한 사용료			
	첨부	증빙자료 1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단 체 명	전 화	
내 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단 체 명	전 화	
내 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반환 신청액		
	반환청구 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시 설 명			
신 청 자	법인(단체)명		
	주 소	법인(단체)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인(단체)설립근거		설립일자	
재 산	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위탁운영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탁관리목적		위탁운영면적	
세부운영계획	별지작성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단체)명 :</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4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천 자전거길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0. 9. 17. ~ 2020. 10. 1.(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절차



5.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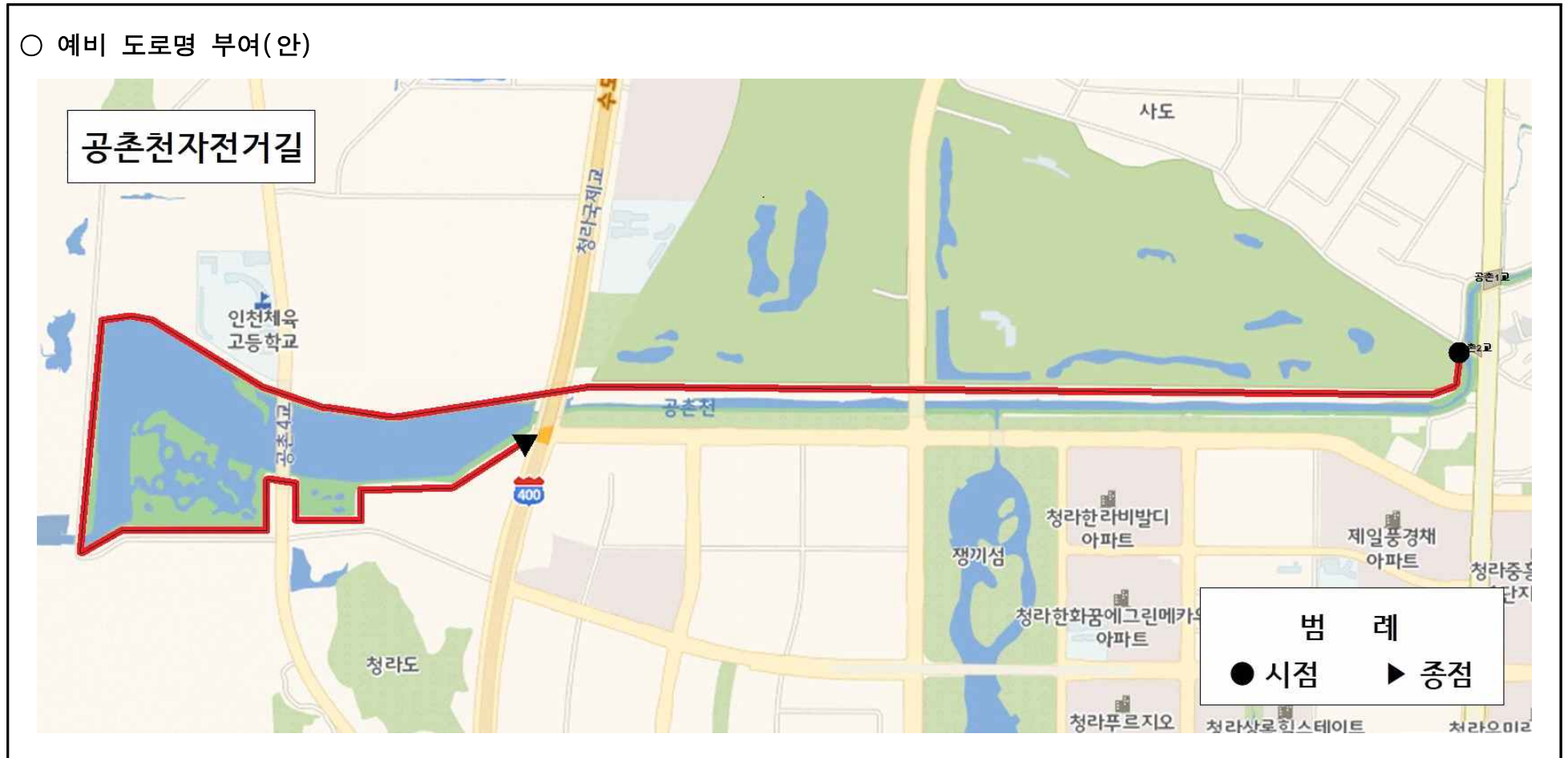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2786)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11층 토지정보과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예비 도로명부여 조서 및 예비 도로구간

연번	도로 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길	공촌천자전거길	연희동	428-126	청라동	7-18	6325	3	20	청라2~3동 검암경서동	공촌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 예비 도로명 부여(안)



도로명[구간] 부여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연번 및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연번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신청(의견) 구간/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부여의견				
<p>예비도로명/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